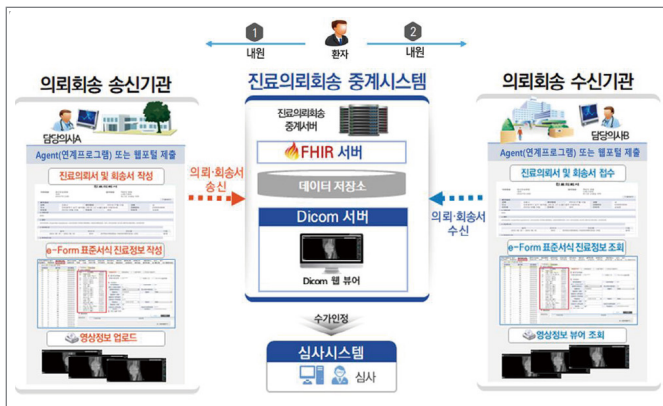


5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란?

- 진료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자의 의뢰·회송서 및 진료·영상정보를 요양기관 간 송·수신 할 수 있는 시스템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ttps://ef.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의뢰·회송’ 선택 → ‘의뢰서 작성’ 또는 ‘회송서 작성’ 선택·작성



❖ 입력방법은 ‘중계시스템’ 직접 작성·제출 방식과 요양기관의 진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한 AGENT 프로그램 활용방식 중 선택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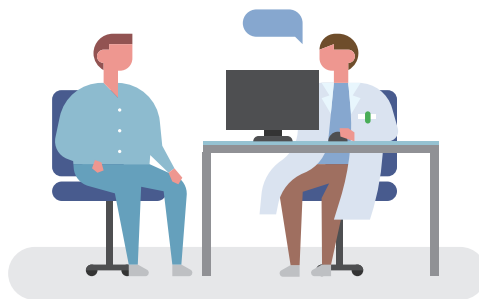
시범사업 지침 등 문의

❖ ‘시범사업 지침’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ttps://ef.hira.or.kr>) ▶ 종합안내 ▶ 게시판 ▶ 공지사항

❖ 문의 및 상담 안내는?

- 시범사업 지침 관련 기타 심사기준, 청구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은 ☎ 1644-2000으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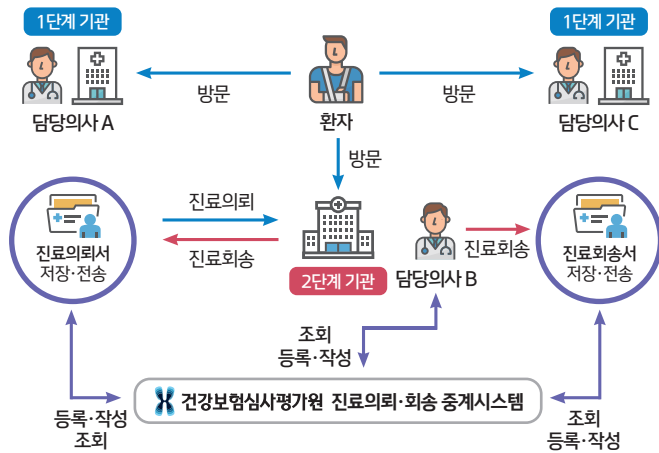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안내



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충실한 협력진료 및 대형병원 환자 쉼림현상을 완화**

진료 의뢰시 진료·영상정보 교류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및 동일 시·도내 의뢰시 수가 가산 등으로 **내실 있는 진료정보 교류 및 지역 내 의뢰 활성화 지원**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주요 경과

- '16.5.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시작 (상급종합병원 13기관)
- '17.12. 전체 상급종합병원(42기관)으로 시범사업 확대
- '1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61기관) 회송기관으로 확대
- '19.7. 전체 종합병원(94기관) 및 전문병원(36기관) 대상 회송기관 확대
- '20.10.8. 상급종합병원 '회송로'로 본 사업 전환
- '20.11.1. 의뢰로 차등(진료·영상정보 제공) 등 2단계 시범사업 시작
- '21.2.15. 제4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관련 회송기관 추가 (종합병원(38기관) 및 전문병원(8기관))

2 대상 시범기관

의뢰를 담당하는 1단계 시범기관

- 2단계 시범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1단계 진료기관
-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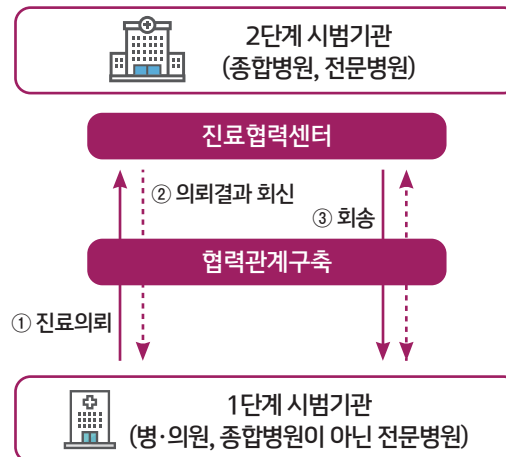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이하 2단계 진료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

3 대상 환자

시범기관에 내원(입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이 필요한 자**

1단계 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가 필요한 자**



4 시범사업 수가

의뢰료-(진료의뢰료 I, II, III)

- 1단계 시범기관이 2단계 시범기관(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및 중계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
- 환자의 진료·영상정보 교류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

구분	인정기준
진료의뢰료 I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시 산정
진료의뢰료 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표준화된 진료정보 1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
진료의뢰료 I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영상정보와 검사결과지(또는 영상의학판독 소견서) 포함 표준화된 진료정보 2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

비수도권 동일 시·도내 의뢰가산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1단계 진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진료의뢰시 산정

구분	행정구역	구분	행정구역
1	서울특별시	10	전라남도
2	강원도	11	광주광역시
3	경기도	12	경상북도
4	인천광역시	13	대구광역시
5	대전광역시	14	울산광역시
6	충청남도	15	경상남도
7	세종특별시	16	부산광역시
8	충청북도	17	제주시
9	전라북도	-	-

회송료

-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요양급여회송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및 중계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